

## CODEX 식품표시 분과위원회 제26차 회의보고서

이 회 정 /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

### I. 서 언

식품표시 분과위원회는 국가간 식품표시 기준을 일치시킴으로써 식품의 전전성을 높이고, 국가간 교역을 원활히 하고자 하며, 또한 영양표시 및 건강강조표시등 각국의 표시기준 입안방향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교환함으로써 합리적인 표시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식품표시 분과위원회는 캐나다를 의장국으로 하여 1965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식품표시 분과위원회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 모든 식품에 적용할 표시규정의 초안작성
- Codex 식품별 분과위원회의 규격안, 실행 규범 및 지침서에 작성된 표시 관련 특정 규정안의 검토, 필요시 개정 및 인증
- 총회가 부여한 특정 표시문제의 검토
- 특히 강조표시(claims) 및 허위표시를 고려하여 식품의 광고와 관련된 문제의 검토

### II. 26차 Codex 식품표시 분과위원회의 회의 결과

#### 1. 의제 목록

- 개 회
- 의제채택
- 총회 및 타 분과위원회에서 회부된 사항들
- 코덱스 규격 중 표시규정 검토
- 유기생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지침서 안
- 과민증유발식품의 표시에 관한 권고 초안
- 급속냉동된 생선스틱, 조각, 필레에 관한 규격 중 표시부분의 개정초안
- 포장식품 표시에 관한 일반규격 개정초안(분류명)
- 생명공학 응용식품의 표시에 관한 권고 초안
- 영양표시 지침서에 관한 개정

- 초안
- 의제 11. 건강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권고 초안
- 의제 12. 스포츠음료 및 에너지음료에 관한 권고 초안
- 의제 13. “채식주의자” 용어 사용에 관한 지침서 초안
- 의제 14. 기타 사업, 앞으로의 작업과 차기회의 일정 및 장소
- 의제 15. 보고서 채택

## 2. 회의 개요

제26차 식품표시 분과위원회는 1998. 5. 24~5. 31, 캐나다, 오타와에서 8일간 개최되었다.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의 Dr. Anne Mackenzie이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42개 회원국 및 29개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239명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 3. 주요 토의내용

- 1) 유기생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지침서 안  
(DRAFT GUIDELINES FOR THE PRODUCTION, PROCESSING, LABELLING AND MARKETING OF ORGANICALLY PRODUCED FOODS)

본 지침서(안)은 제25차 회의에서 이견이 많아 7단계로 진전시키지 못하고 6단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되어 1년간 각국 의견을 수렴하고 제26차 회의 전에(5.23~25) 실무작업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정하여 본 회의에 제7단계로 상정하였다.

실무작업단 토의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유전자 변형물질(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의 유기식품 포함 여부는 아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브라질, 스위스 등 대부분의 참가국들이 GMO가 생태계 및 인체에의 위해성 여부가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유기식품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동의

하여 지침서(안)대로 GMO는 제외키로 하였다.

둘째, GMO 정의문제는 Codex 식품표시 분과위원회 차원의 GMO 정의는 없지만 잠정적으로 회원국에게 GMO의 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지침서에서 정의를 규정해 되 전체 Codex 차원의 정의가 만들어지면 지침서의 정의를 대체키로 하고 그동안은 각국별로 별도의 정의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GMO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최근 GEO(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s)와 GMO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지침서에도 GMO/GEO를 같이 사용키로 하였다. GMO/GEO 정의는 다음과 같다.

(최초안) “현대적 생물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모든 물질” 특별히, DNA 재조합 기술 및 유전적 구성을 변형시키는 분자생물학 등을 이용한 모든 기술을 포함(자연생태에서 일어나지 않거나 전통적 육종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

(수정안) “자연교배로는 일어나지 않는, 유전물질을 변형시키는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물질”(DNA재조합, 세포융합, 캡슐화, 유전자 결위 등의 기술을 이용)

셋째, 유기식품 표시 문제는 식품이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표시할 경우 “organic”, “biodynamic”등의 용어 또는 유사용어를 사용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었으나 위 용어에 대한 축약형(diminutives, 예 : “bio”)도 표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프랑스, 스위스)되어 지침에 포함키로 하였다.

넷째, 가공식품에 유기농산물 원료 허용 비율문제는 비유기 농산물원료를 전체성분의 5%까지(물과 소금제외) 사용하더라도 유기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의 비율에 대해서는 각국별로 자율적으로 규정토록 하였다.

본회의 토의내용을 살펴보면 실무작업단 회의에서 조정된 지침서(안)을 7단계로 상

정하여 논의하였으며 “유기축산분야” 및 “각국별로 허용가능 물질을 설정하기 위한 조건”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무작업단 조정안대로 의결하였다.

결과조치로 유기축산분야와 허용가능 물질 설정을 위한 조건분야만 6단계로 남고 지침서(안)을 8단계로 회부하였다.

## 2) 과민증유발식품의 표시에 관한 권고 초안

### (DRAFT RECOMMENDATIONS FOR THE LABELLING OF FOODS THAT CAN CAUSE HYPERSENSITIVITY)

본 권고초안은 과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의 표시를 위하여 기존에 있는 포장식품의 표시에 관한 일반규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회에서 5단계로 채택되었다. 또한 Codex 총회는 과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과 원재료의 목록작성에 관해 좀 더 과학적 조언이 필요하다는 당 분과위원회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JECFA(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데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토의 내용을 살펴보면 JECFA는 당 분과위원회가 요청한 특정물질의 과민증유발 가능성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좀더 일반적이고 종괄적인 자문을 위해서 자문회의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으며, 당 분과위원회에서 “목록에 포함될 식품을 결정하고 목록에 포함시킬 때의 기준”을 JECFA에 요청한 데 대해, 당 분과위원회가 이 목록을 식품군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식품으로 할 것인지, 또 알러지 반응에 대해서만 검토하면 되는지 아니면 intolerance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하는지를 좀 더 분명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당 분과위원회는 food allergies와 intolerance를 모두 포함하기로 하고 개정안 제목을 hypersensitivity로 하기로 하였다. 또한 식품군과 개별식품

모두 목록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Codex 사무국은 당 분과위원회가 과학적 조언이 필요한 문제를 분명하게 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JECFA가 53차 회의(1999년 6월)에서 과민증의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며 또 과민성에 관한 과학적 증거를 검토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물색 중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반해서, 현재의 과민증 유발 목록이 자문단의 권고에 근거하여 정한 것이므로 당 분과위원회가 재검토할 필요가 없고 공중보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현재의 안대로 종결해야 하며 다만 이 목록을 좀더 새롭게 수정하고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식품분류에는 “우유 및 유제품”, “어류 및 어류제품” 등의 경우 너무 광범위해서 실제는 알러지를 유발하지 않는 제품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콩, 땅콩 및 그 제품류”的 경우 이들의 단백질 부분은 알러지를 유발하나 정제 혹은 가열처리된 기름이 알러지를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근거가 없다. 따라서 식품이나 식품군의 정의를 이런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민증 유발 물질의 한계수준과 복합원재료에서 캐리오버의 문제, 또 목록에 포함되는 물질의 기준에 대해 JECFA의 검토를 요청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식품에 25% 이하 존재하는 복합원재료의 개별원재료는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25% 규칙”을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이를 5%로 낮추는 것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않지만 영향을 받는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측과, 알러지 유발 물질은 5% 보다 더 적은 양으로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5%로 줄이는 데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있었다. 더욱이 25% 규칙 문제가 과민증과 연결되어서는 안되며, 적절한 표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더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과조치로 항상 표시되어야 하는 원재료 목록에 대한 개정안은 제23차 총회의 승인을 위해 8단계로 진행하고 25% 규칙에 관한 사항은 6단계로 회부하여 추가코멘트를 받기로 하였다.

### 3) 생명공학 용용식품의 표시에 관한 권고 초안

(PROPOSED DRAFT RECOMMENDATIONS FOR THE LABELLING OF FOODS OBTAINED THROUGH BIOTECHNOLOGY)

제25차 회의에서 검토된 권고초안을 회람하여 받은 코멘트를 중심으로 권고초안을 재작성하였다. 특히 본 초안에는 GMO 함유 식품과 GMO는 함유하지 않으나 그로부터 생산된 식품이 일반식품과 유의하게 다른 경우 표시해야 하는 대체안이 들어 있다.

토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가지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첫째, 조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만 표시토록 하자는 의견(브라질 대표단 등)으로 ALINORM 97/22A의 appendix VI. “생명공학에 의해 생산된 식품이 기존의 식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거나 비교할 기존의 식품이 없는 경우, 해당 식품의 성질과 영양조성, 사용의도 및 기타 그 제품을 서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표시상에 분명히 기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따라야 하므로 일반식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식품에도 특별표시를 요구하는 것은, 특정 건강상 위해에 대한 근거는 없다는 것이며 둘째, 대체안에 찬성하는 의견으로 유럽연합은 GMO를 함유한 모든 식품과 GMO로부터 생산되었으나 GMO를 함유하지 않는 식품이 현재의 식품이나 원재료와 더 이상 동등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시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유전자조작으로 인한 단백질이나 DNA를 함유하지 않는 식품은 현재의 식품이나 원재료와 동등하게

간주되어 표시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대표단은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입장이 과학적 평가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지하면서,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의 개념은 표시문제와 관계없다고 주장하였고 둘째, 소비자연합들은 모든 제품에 표시하자는 의견으로 현대 생명공학과 관련된 문제는 제품의 성질에 관한 정보의 차원을 넘어서 소비자가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가 반영되어야 하며 따라서 표시가 소비자의 신뢰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가 소비자에게 극히 중요하며 소비자가 정보를 가지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enetically engineered products는 모두 표시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윤리적·문화적 기타 개인의 기호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기 위한 기본 권리를 허용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거나 알려지지 않은 항원에 민감한 소비자에게는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표시의 근거로 실질적 동등을 고려하는 것은 소비자의 개입을 배제하는 가치판단이 들어 있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소비자연합은 “biotechnology”와 “modern biotechnology” 용어 대신 “genetically engineered/modified”란 용어를 선호하였다. IFOAM(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은 유기생산자가 일반시장에서 판매되는 물질을 사용할 때에는 그 물질이 GMO나 관련 제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genetically engineering으로부터 유래된 제품은 모두 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합의가 어렵게 되자,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분야를 우선 검토하자는 의장의 제안에 따라 생명공학을 통해 얻어진 식품의 정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당초 안에서는 1) “new”를 “modern” technology로 바꾸고 2) “biotechnology”라는 용어가 소비자에게 혼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었는데, 당 분과위원회에

서는 캐나다와 유럽연합에서 제안한 정의개정안을 검토하여 새로운 안을 작성하였다. 또한 genetic modification을 통해 전이된 항원도 표시하기로 동의하였다.

결과조치로 “정의” 및 “항원”조항은 5단계로 진행키로 하고 다른 모든 조항은 3단계로 돌려 코멘트를 더 받은 다음 회의시 검토할 것에 동의하였다.

#### 4) 영양표시 지침서 개정 초안

##### (PROPOSED DRAFT AMENDMENTS TO THE GUIDELINES ON NUTRITION LABELLING)

지난 제25차 회의에서 지침서의 3.2조를 개정하여 영양표시를 할 경우 포화지방, 당류, 섬유소, 나트륨을 표기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총회가 이 제안을 새로운 작업으로 승인함에 따라 영양표시 지침서의 부분 개정안을 3단계로 회람하였다.

현재의 지침서에서는 영양소표기시 열량, 단백질, 이용가능한 탄수화물, 지방함량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본 제안은 포화지방, 당류, 섬유소, 나트륨 표시도 의무조항으로 하자는 것이다.

토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대로 유지하되 당류, 섬유소, 포화지방, 나트륨 중의 하나에 대해 강조표시한 경우에는 이 네 가지 모두 의무조항으로 하자는 의견(EC 업저버 등), 8가지 영양소 모두 표시할 경우 소비자의 혼돈을 야기하고 비용부담이 따르는 반면,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이익은 적고 표시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므로 특별한 강조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만 표시하도록 하여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 및 의무표시항목은 국가당국이 결정하도록 하고 영양표시를 의무화 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결과조치로 영양소 목록을 제한 또는 확대하자는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하여, 이번 회의에서는 지침서를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개정초안을 3단계로 돌려 코멘트를 더 받기로 하였다. 공중보건의 차원에서 당류, 섬유소, 포화지방, 나트륨항목을 추가할 필

요가 있는지에 대해 Codex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분과위원회의 조언을 얻기로 결정하였다.

#### 5) 건강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권고 초안 (PROPOSED DRAFT RECOMMENDATIONS FOR THE USE OF HEALTH CLAIMS)

지난 회의에서 건강강조표시 문제를 재검토키로 함에 따라 건강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권고 초안을 3단계로 회람하여 코멘트를 받았다. 이 권고초안은 영양강조표시에 관한 지침서에 건강강조표시 조항을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토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능에 관한 주장은 인체실험으로 입증된 것에 한하자는 의견(일본), 건강강조표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 규정에 따라 관련당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자는 의견(멕시코)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건강강조표시는 국가 영양정책과 일치해야 한다는 서문을 첨가하기로 하자는 노르웨이 제안에 합의하였다.

현재 국내법에서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 및 처치에 관한 강조표시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유럽연합 등), 일반적으로는 건강강조표시를 찬성하지는 않지만 이들이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또 소비자교육 차원에서 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소비자연합),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건강강조표시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산업계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어야 하고(CIAA; Confederation of the food and Drink Industries of the EU, ICGMA; International Council of Grocery Manufacturers Associations), 건강강조표시를 허용한다고 해서 건강과 영양문제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는(CSPI;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결과적으로 건강강조표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 가지 단일 식품에 관한 것이어서는 안되며, 전체 식사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학적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결과조치로 당 분과위원회는 이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본 의제를 3단계로 다시 회부하여 더 많은 코멘트를 받은 후 다음 회의에서 논의토록 하였다. 건강강조표시에서의 과학적 근거에 관한 자문을 위해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 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데 동의하였다.

#### 6) 스포츠음료 및 에너지음료에 관한 권고 초안

(PROPOSED DRAFT RECOMMENDATIONS FOR SPORT AND ENERGY DRINKS)

지난 제25차 회의에서 “스포츠음료” 및 “에너지음료”에 관한 권고를 설정하자는 남아프리카의 제안을 검토하고, 총회에 진행 방법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고, 제22차 총회에서 “스포츠음료” 및 “에너지음료” 제품에서는 주요문제가 강조표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본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아울러 이 작업을 Codex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 분과위원회와 Codex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 분과위원회와 협조할 것을 본 분과위원회에 요청하였다.

토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 권고초안은 강조표시에 국한하였으며 제품의 조성 등 다른 면은 언급되지 않았고 제품에 적힌 강조표시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으므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관련 용어들이 정의될 필요가 있는 남아프리카의 설명이 있었다.

특정제품에 대한 강조표시와 연결하지 말고, 강조표시 문제로 지침서를 검토하자는 의견을 일부 국가가 지지하였고, 스포츠음료를 영어가 섭취해서는 안 되며 대체음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규정을 두자(말레이지아), 한정된 수의 강조표시(예: isotonic, hypertonic, hypotonic)만을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영국), ‘스포츠음료와 청량음료 간에 열량함량이 거의 차이가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일부인구집단(예, 운동

선수)의 영양요구량은 정상식사를 통해 충족될 수 있으므로 스포츠음료에 관한 권고안은 특정인구집단의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에 근거하여야 한다’, ‘에너지음료의 경우 Codex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 분과위원회에서 적절한 열량 수준을 정해야 한다’, ‘본 제품의 첨가물 조항은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 분과위원회에서 식품첨가물에 관한 일반규격에 의거하여 정해져야 한다’등 여러 가지 의견이 표명되었다.

결과 조치로 토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남아프리카가 문서를 재작성하여 회람하고 다음 회의시 더 검토키로 하였다.

#### 7) “채식주의자” 용어 사용에 관한 지침서 초안(정부코멘트)

(PROPOSED DRAFT GUIDELINES FOR USE OF THE TERM “VEGETARIAN”)

제25차 회의에서 채식주의자를 위한 제품이 여러가지 강조표시를 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채식주의자”에 대한 정의를 설정하자는 남아프리카의 제안을 논의하였다. 이 안이 제22차 총회에서 새로운 작업으로 승인됨에 따라 본 지침서 초안을 3단계로 회람하여 코멘트를 받았다.

토의 내용을 살펴보면 “채식주의자”라는 용어를 일정한 기준없이 사용하고 있어, 채식주의자들 특히 일반적인 구분(예를 들어 “vegetarian”, “lacto-ovo vegetarian”, “lacto-vegetarian”, “vegan”)에 따른 식사를 구성하는데 소비자에게 혼돈을 일으키므로 이를 위해 포장식품의 표시에 관한 일반규격을 개정하는 방안 혹은 강조표시에 관한 일반지침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남아프리카의 설명이 있었다.

인도는 인구의 대다수가 철저한 채식주의자이므로 “vegetarian”이나 “strict vegetarian” 용어는 육류, 가금류, 생선, 유제품 혹은 계란을 함유하지 않은 제품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관련용어를 정의할 때에는 다양한 용어(예를들면, vegan) 및 세계 여러국

가들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일반 표시규격이나 강조표시에 관한 일반 지침서에서 원재료목록을 통해 그와 같은 강조표시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용어를 별도 정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vegetarian” 용어 사용에 대한 일반 지침이나 규격을 정할 필요는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작업은 제품표지에 적힌 강조표시를 정의하는 작업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결과 조치로 남아프리카가 인도와 협조하여 본 문서를 재작성키로 하였으며, 재작성된 문서를 회람, 다음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 III. 결 언

국가간 식품교역량의 증가로 인하여 한 나라의 식품관리정책은 제외국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없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식품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 끊임없이 자료를 수집하고 주요 논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식품표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국제간 표시기준의 검토는 다양한 입장에 있는 각국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또 식품의 분야별 주체인 정부, 산업체, 소비자의 의견이 전체적으

로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WTO/SPS 협정에 의해 국제간 분쟁 발생 시 기준으로 적용하게 될 Codex 식품표시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제간 표시기준의 일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 일치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적 근거(Scientific Evidence)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시행중인 표시규정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응용식품의 표시」나 「건강강조표시 사용」 등 현재 Codex 식품표시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안은 우리나라 식품정책 및 식품산업계의 앞으로의 방향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은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식품표시 분과위원회는 과민증 유발식품의 표시와 관련하여 JECFA의 의견을 요청키로 하였으며 건강강조표시와 스포츠음료에 관한 의제는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 분과위원회(Codex committee on food additives and contaminants),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 분과위원회(Codex committee on nutrition and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에 각각 자문을 구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해당 분과위원회의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두고 추적하여야 할 것이다.